

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 327 호
의 제	이사회 의장 선출(안)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
2. 주 문 : 이사회 의장으로 ○○○을 선출한다.

3. 제안사유 :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·주관할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여 향후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5. 참고사항

-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」 제4조 제3항 :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 328 호
의 제	2015년도 주요사업계획(안) 심의·의결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
2. 주 문 : 원안대로 의결한다

3. 제안사유 : 2015년도 공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계획(안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심의·의결코자 함
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5. 참고사항

-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」 제22조 및 제27조

첨부 :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(안) 1부

#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 329 호
의 제	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 심의·의결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  
2. 주 문 : 원안대로 의결한다
  
3. 제안사유 : 2015년도 공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  
불임과 같이 편성하여 심의·의결코자 함
  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  
5. 참고사항
  -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」 제22조 및 제31조

첨부 :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 1부

#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 330 호
의 제	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 심의·의결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  
2. 주 문 : 원안대로 의결한다
  
3. 제안사유 :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『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』 개정  
에 따라 우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하고, 행동강령 용어 등을 정비하여 행동강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  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  
5. 참고사항
  - 국민권익위원회, 「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」
  - 국민권익위원회,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통보」 (2014. 7. 1.)

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의안 번호	제 33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20.

제 출 자 : 경영기획실장

## 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『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』 개정에 따라 우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하고, 행동강령 용어 등을 정비하여 행동강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연고관계로 인한 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
- 용어 정비
  - 공단의 장, 소속 기관의 장 → 이사장
  - 부패방지법 →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  - 국가청렴위원회 → 국민권익위원회
- 중복조항 통합
  - 금품 등 제공금지, 금품 등을 주는 행위금지 → 금품 등을 주는 행위금지

## 3. 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, 「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」
- 국민권익위원회,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통보」 (2014. 7. 1.)

#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제1호 사목, 제2호 라목의 '공단의 장'을 '이사장'으로 개정한다.

제4조(공정한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) 제4항 및 제5항,  
제8조(정치의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제1항 및 제2항,  
제19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 제2항,  
제21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 제2항의 '소속기관의 장'을 '이사장'으로 개정한다.

제5조(이해관계직무의 회피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2.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3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4. 공단 퇴직 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5.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

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6.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고,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7.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(알선·청탁 등의 금지)제2항의 「부패방지법」 제2조 제2호'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'로 개정한다.

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을 제15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으로 개정한다.

제17조(금품 등 제공금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7조의 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를 삭제한다.

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 제1항 중 '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,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'를 '이사장,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'로 개정한다.

제2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 제2항 중 '이사장에게'를 '국민권익위원회에'로 개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이 강령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




현 행	개 정 안
<p>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<u>소속기관</u>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<u>이사장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<u>공단의 장</u>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3. &lt;생략&gt;</p> <p>4. <u>그 밖에 공단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만, <u>이사장</u>이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4. <u>공단 퇴직 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5. <u>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<u>소속 기관의 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<u>소속 기관의 장</u>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6. <u>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고,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7. <u>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사장</u>에게----- 다만,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사장</u>에게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 ①임직원은 공무원,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<u>소속기관의 장</u>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<u>소속기관의 장</u>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사장</u>에게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이사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알선청탁 등의 금지)</p> <p>① &lt;생 략&gt;</p> <p>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「부패방지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2조(알선청탁 등의 금지)</p> <p>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-----.</p>
<p>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</p> <p>① ~③&lt;생 략&gt;</p>	<p>제15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</p> <p>①~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제17조(금품 등 제공 금지)</p> <p>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&lt;신 설&gt;.</p>	<p>제17조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</p> <p>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의 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</p> <p>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9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<u>소속 기관의 장</u>에게 신고하여야 한다</p>	<p>제19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</p> <p>①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이사장에게 ----- -----.</p>
<p>제21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<u>소속기관의 장</u>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·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</p> <p>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<u>이사장</u>은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</p> <p>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<u>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,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</u>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&lt;생략&gt;</p>	<p>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</p> <p>①----- -----<u>이사장,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</u>에----- -----.</p> <p>②~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제2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</p> <p>①&lt;생략&gt;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<u>이사장에게</u>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</p> <p>①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국민권익위원회</u>에----- ----- -----.</p>

#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 331 호
의 제	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업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일부 개정(안) 심의·의결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
2. 주 문 : 원안대로 의결한다

3. 제안사유 :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『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』 권고에 따라 우리공단 업무관련 고발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
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5. 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, 「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」 (2014. 4.)
- 안전행정부,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(2013. 10.)

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(안)

의안 번호	제 33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20.

제 출 자 : 경영기획실장

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『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』 권고에 따라 우리공단 업무관련 고발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

## 2. 주요골자

-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대상 확대
  - 현행: 임직원, 퇴직자
  - 개정: 임직원, 퇴사자, 공무수행사인, 업무관련 민간심의위원
- 고발기준의 확대 및 세분화
  - 현행: 직무관련 금품·향응 수수한 경우
  - 개정: 직무관련 금품·향응을 200만원 이상 수수 또는 100만원 이상 요구한 경우

## 3. 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, 「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」 (2014. 4.)
- 안전행정부,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(2013. 10.)



#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(안)
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고발대상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고발대상)①고발대상은 소속 임·직원 및 퇴직자, 공무수행 사인, 업무관련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다.

②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공직자윤리법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

제4조(고발여부의 판단)을 제4조(고발의 기준)으로 개정하고, 제1항 중 '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'를 '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'로 개정하고, 제1호 중 '금품을 수수한 경우'를 '2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을 수수하거나,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'로 개정하며, 제2호 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
<p>제2조(고발대상) <u>고발대상은 소속 임·직원(퇴직자 포함)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,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공직자윤리법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</u></p> <p>&lt;본항 신설&gt;</p>	<p>제2조(고발대상) ① <u>고발대상은 소속 임·직원 및 퇴직자, 공무수행 사인, 업무관련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② <u>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,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공직자윤리법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</u></p>
<p>제4조(고발여부의 판단) ① <u>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</u></p> <p>2. <u>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. 단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가~다. &lt;생략&gt;</p> <p>3. ~7. (생략)</p>	<p>제4조(고발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----- 2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을 수수하거나,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</p> <p>2.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</p> <p>&lt;단서 삭제&gt;</p> <p>가~다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3. ~7. (현행과 같음)</p>

## 부 의 안

제 67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14. 11. 20.	의안번호	제332호
의 제	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 심의·의결		
구 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	

1. 제 안 자 : 경영기획실장

2. 주 문 : 원안대로 의결한다.

3. 제안사유 : 현 직종별 직급에 대한 직위명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에 따른 승진 제한자 및 중·하위직급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, 현재 55세 ~ 57세인 정규직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『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』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4.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5. 참고사항
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(2016. 1. 1.부터 시행)
- 국민권익위원회, 「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」 (2014. 4.)
- 안전행정부,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(2013. 10.)
-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

의안 번호	제33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20.

제 출 자 : 경영기획실장

## 1. 개정이유
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1월부터 공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 적용됨에 따라 이를 조기 시행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- 현 직종별 직급에 대한 직위명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에 따른 승진 제한자 및 중·하위직급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- 국민권익위원회 『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』 권고에 따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정규직(사무직, 기술직, 사서·체육전문직)에 대한 정년 60세로 연장
-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을 재량규정→기속규정으로 변경
-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→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변경
-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위원의 수를 3인 이내 →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
- 징계부가금 부과조항 신설
  -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 등에 대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수 및 횡령 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조항 신설
- 징계시효를 2년이내 → 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) 이내로 확대
- 별표 1 직종별 직급에 대한 직위명 상향 조정

### 3. 참고사항
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(2016. 1. 1.부터 시행)
- 국민권익위원회, 「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」 (2014. 4.)
- 안전행정부,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(2013. 10.)
-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(정년) 제1항 제2호 내용 중 '사서 전문직 : 57세'를 '사서·체육 전문직, 현업직 : 60세'로 개정한다.

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6조(의원면직) 제2항 중 '제한할 수 있다'를 '제한하여야 한다'로 개정한다.

제44조(구성) 제2항 단서조항 중 '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'를 '인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구성한다'로 개정한다.

제58조의 2(징계부가금 부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8조의 2(징계부가금 부과)**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(收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
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중 '2년'을 '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)'으로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

직 종	직 급	직 위	비 고
사무직·기술직·전문직	2급	본부장	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, 직제규정상 각 팀의 관리자는 실장내지 팀장으로 표기한다.
	3급	실장	
	4급	부장	
	5급	차장	
	6급	대리	
	7급	주임	
	8급	주무관	
	9급	주무관	
현업직		주무관	
견습직		주무관	
보육교사직	6급	원 장	

부 칙(2014. 11. ○○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



현 행	개 정 후
<신 설>	제58조의 2(징계부가금 부과)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(收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	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----- ----- 3 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-----.

[별표 1]

- 현 행 -

직 종	직 급	직 위	비 고
사무직·기술직·전문직	2급	본부장	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, 직제규정상 각 팀의 관리자는 실장내지 팀장으로 표기한다.
	3급	부장	
	4급	차장	
	5급	대리	
	6급	주임	
	7급	주무관	
	8급	주무관	
	9급	주무관	
현업직		주무관	
견습직		주무관	
보육교사직	6급	원 장	

- 개정 후 -

직 종	직 급	직 위	비 고
사무직·기술직·전문직	2급	본부장	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, 직제규정상 각 팀의 관리자는 실장내지 팀장으로 표기한다.
	3급	실장	
	4급	부장	
	5급	차장	
	6급	대리	
	7급	주임	
	8급	주무관	
	9급	주무관	
현업직		주무관	
견습직		주무관	
보육교사직	6급	원 장	